

의안번호	2202308
의 퇴 인	이춘석의원
회 답 일	2024.8.5
추 계 번호	24B234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매수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3억원, 2028년 36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370억원(연평균 74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안 제2조 (유효기간)	123	106	105	36	370	7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안 제2조 (유효기간)	제32조제4항1)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의무규정

1)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관리)

-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	○	환경부의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법 제32조제4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매수사업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임
- 본 추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사업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며, 토지 매수 계획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와 기존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산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으로 함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산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까지임

용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새만금호 특별관리지역 토지매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매입지역면적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추계대상) 환경부에 따르면 동법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중 토지매수가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18호, 2021.11.3.)
 - 지정기간 :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표 2] 토지매수가 필요한 특별관리지역 현황

위 치	지정면적(m ²)	비 고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176,746m ² (1,744필지)	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표 3] 투자 현황 및 계획(2022~2025년)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예산(억원)	481	118	103	192	68
축사매입	343	118	57	168	—
생태복원 (철거 및 식생 등)	138	—	46	24	68
토지매입*(m ²)	169,153	59,204	27,927	82,022	—
축사(개)	53	15	13	25	—
가축감축(두)	63,488	18,052	15,757	29,679	—
생태복원(m ²)	169,153	—	59,204	27,927	82,022

주: 잔여지(46,414m²)는 미포함된 면적으로, 잔여지 포함시 실 면적 215,567m²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연도별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2024년까지 예산(413억원)으로 31개 축사 매입 예상

[표 4] 연도별 토지매입 현황

연도	본예산	구분	매수건	집행액(억원)	매수면적(m ²)
합계	413		20건(완료) +11건(예정)	251.5(집행) +161.5(예정)	96,009(매입) +32,049(예정)

연도	본예산	구분	매수건	집행액(억원)	매수면적(m ²)
2022	118	토지매입	‘22년 매입	106.19	38,350
			9건	61	22,102
				8.49	2,945
				19.9	5,724
				1.2	687
				3.8	660
				1.9	661
				5.2	2,147
				1.6	472
				3.1	2,952
2023	103	토지매입	‘23년 매입	53.8	26,052
			4건	12.7	11,470
				16	5,569
				7.4	3,560
				17.7	5,453
		생태복원		9.22	—
2024	192	토지매입	‘24년 매입	77.5	31,607
			7건	5	2,705
				12.6	4,583
				1.9	1,180
				12.4	5,844
				15.1	7,660
				26.8	7,807
				3.7	1,828
		생태복원		4.79	—
		예정	토지매입 11건*	48.5	32,049
			생태복원(∼‘25)	71	—
(2025 이월)	—	예정	토지매입(18건) 잔금	42	63,656

주 : 2024년 매입예정 11건은 감정평가(‘24.8월 말) 중으로 금액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이 필요한 사업지
별 소요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은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생태복원비용과 수수료
로 구성됨

- (토지 매입량) 전체 53개 축사부지 215,567㎡ 중 매입가능 부지 128,058㎡ (완료 96,009㎡, 진행 32,049㎡) 면적을 제외한 잔여 물량(87,509㎡)
- (건물 매입량) 전체 53개 축사건물 면적 93,000㎡ 중 매입가능 건물 54,528㎡ (완료 40,950㎡, 진행 13,578㎡) 면적을 제외한 잔여 물량(38,472㎡)
- (매입 단가) 토지·건물매입 및 영업보상의 경우 '22~'23년 실제 감정평가 단가에 물가상승률 연 3% 적용한 '25~'27년 평균 단가
- (생태복원) 잔여물량 및 설계단가에 '26~'28년 물가상승률 연 3% 적용
- (수수료 등) '22~'23년 사업 소요 평균 단가

[표 5]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잔여농가 투자금액 세부산출내역

구 분			잔여농가 22개소		
			사업량	평균단가	소요비용(억원)
합계					370
매입비	소 계				250
	축사매입	계			215
		토지매입	87,509㎡	69,140원/㎡	60
		건물매입	38,472㎡	398,520원/㎡	153
		주거이전비	21개소*	8,888천원/개소	2
	영업보상	계			29
		돼지	24,513	118,750원/두	29
		한우	-		-
	수수료 등		3년	2억원	6
	소 계				120
생태복원	축사철거		40,500㎡	247,770원/㎡	100
	수립대 조성		99,225㎡	14,500원/㎡	14
	수수료 등		3년	2억원	6

주: * 매입대상 22개 중 미소한돈(법인) 1개소 제외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 매수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3억원, 2028년 36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370억원(연평균 74억원)으로 추계됨

[표 6]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 사업비: 2025~2028년

(단위 :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합계
추가재정소요(a+b)		123	106	105	36	370
축사 매입*	금액(a, 억원)	123	64	63	—	250
	면적(m ²)	43,114	22,491	21,904	—	87,509
	개수(개소)	11	7	4	—	22
생태복원 (철거 및 식생)	금액(b, 억원)	—	42	42	36	120
	면적(m ²)	—	36,118	36,118	26,989	99,225

주 1. 축사매입(87,509m²) = 잔여지 포함 면적(215,567m²) - '24매입(예정) 면적(128,058m²)

2. 매입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IV. 부대의견

- 본 보고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금액으로, 향후 매입 추진상황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